

학생행정

장학금 지급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설립 정신에 입각하여 면학 풍토를 조성하고, 신입생 및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사무 분장) 장학생 선발에 관한 업무는 성적 장학은 교무과에서, 기타 장학은 학생과에서, 특수 장학은 장학위원회가 관장한다.

제2장 장학위원회

제4조 (설치와 구성) ① 학교의 장학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총장
2. 각 원장
3. 행정본부장
4. (해당) 각 학과장
5. 학생과장
6. 교무과장

②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

제5조 (임기와 기능) 제4조의 장학위원은 보직 기간으로 하며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장학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신입생 장학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학에 관한 주요사항

제6조 (회의) ① 본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가부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정한다.

제7조 (장학금 종류) ① 교내 장학금은 배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에 의거하

여 지급한다.

1. 총장 장학금 - 학생 중에 약간 명의 우수자에게 등록금 소정액을 지급한다.
2. 성적 장학금 - 매 학기말 성적 우수자 중 약간 명에게 등급별로 지급한다.
3. 교직원 장학금 - 학교 교직원 직계 가족에게는 소정의 등록금을 지급한다.
4. 근로 장학금 - 학업 성적이 우수하며 성실 근면한 자로서 매 학기 근로시간 40시간 이상을 정하여 학비 조달이 어려운 자에게 소정액을 지급한다.
5. 신입생 성적 우수 장학금 - 매 학년도 성적순에 따라 수업료를 지급한다.
6. 기타 장학금 -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의된 자에게 지급한다.

② 교외 장학금은 기탁자의 조건이나 규정에 따라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1. 동창회 장학금 - 동창회에서 지정하는 조건에 따라 선발된 학생에게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지정 장학금 - 장학금 출연자가 장학금과 장학생을 정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출연자의 지급 조건이 없을 때에는 본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라 정하여 지급한다.
3. 특수 후원 장학금 - 특수 후원자 있을 경우 약간 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4. 원우회 임원 장학금 - 원우회 회장단에게 수업료 감면을 하도록 한다.

제3장 신청 및 선발

제8조 (장학금 신청)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매 학기 공납금 등록 기간 1주일 전부터 등록 기간전일까지 해당 구비 서류를 갖추어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 규정 제7조 제①②항은 예외로 한다.

제9조 (신청자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학기를 경과하지 않고는 신청할 수 없다.

1. 휴학자
2. 복학자
3. 재 입학자
4. 해외 유학 중이거나 신청자
5. 학칙에 의거하여 처벌 중이거나 처벌을 받은 자
6.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부적격자로 판정 받은 자

② 장학금 수혜자가 제1항 규정에 의거 제한을 받게 되는 자는 한 학년도가 경과하지 않고는 신청할 수 없다.

제10조 (확정 통지) 총장은 장학생을 확정하여 회계에 통보하고 수혜 학생에게 통지한다.

제11조 (장학 증서) 본 규정 제9조에 의거 확정된 자에게는 장학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 (지급 결정의 유효) 장학금 지급 결정의 유효 기간은 해당 학기 등록 기간 까지로 한다.

제4장 장학금 지급의 제한

제13조 (중복 수혜의 제한) 모든 장학금은 한 종류에 한하여 지급한다(중복지금은 금한다).

제14조 (지급 한도액) 모든 장학금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해당 학기 학년의 등록금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 (방법) 장학금 지급은 등록금 납부 시에 차액만을 지급하도록 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제16조 (규정 외 처리 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성희롱 및 성폭력의 예방과 처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이하 “학교”이라 한다)의 구성원이 성적 자율권을 확보하고 구성원을 성희롱과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 행위의 구성 여부에 관계없이 교육,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 주관적 판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 및 성적 성격을 띤 언어적, 물리적, 정신적 행위를 통해서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나. 제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 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 성차에 기반한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폭력을 주는 행위

2.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 범죄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본 대학원 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교원,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양성평등교육원 소속 전문강사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받아야 한다(단, 불참시 불이익 있을 수 있다).

② 성희롱 및 성폭력으로 신고된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의 지위 변화는 그 적용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제4조 (피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의 의무) ①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와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③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그 배제 기타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④ 성희롱 및 성폭력으로 신고된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한 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떤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

⑤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를 처리하는 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방침의 결정 이전까지는 피신고자나 가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

⑥ 신고인 보호는 제4항에 준거한다.

제2장 상담 및 처리 기구

제5조 (기구 설치) ① 학내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처리를 위해 교목실 내에 상담실을 설치 운영한다.

② 교목실 내에 상담실 운영의 기본 방침과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의 근절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 및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성희롱 및 성폭력 대책 위원회를 만든다.

제6조 (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이에 대한 상담 및 기록
2.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심리 치료
3. 가해자 재교육
4.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접수된 사건에 대해 대책 위원회에 사건 조사 요구
6.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와 연구
7. 기타 상담실 운영에 관한 업무

제7조 (성희롱 및 성폭력 대책 위원회) ①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의 근절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 및 사건 처리를 위하여 성희롱 및 성폭력 대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대책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목과장이 되며 위원은 교목과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필요 시 외부 전문가 1인을 교목과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이 대책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9조 (대책 위원회 업무) 대책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예방과 대책 수립
2.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3. 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성희롱 및 성폭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제3장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처리

제10조 (신고) ① 피해 신고는 피해자나 대리인 혹은 제3자가 상담실에 한다.

② 방문, 서면, 전화 통신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단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조사하지 못한다.

③ 교수 대표 기구, 직원 대표 기구, 각 학생회 등 상담실 이외의 학내 기관에서 신고를 접수했을 경우 그 즉시 상담실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11조 (조사 및 심의 의결)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대책 위원회는 상담실에 신고 접수된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을 1주일 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사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필요한 경우 대책 위원장이 30일 이내에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당해 성폭력 및 성희롱에 대한 피해의 원인이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항

나. 성희롱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었거나 그 처리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라. 기타 대책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대책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성희롱 및 성폭력 사안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상담에 응해야 하고 조사 내용과 처리 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4. 사건 조사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피해자, 가해자가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5.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의 대리인이 피해자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6. 대책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해자의 행위가 성희롱 및 성폭력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제12조 (징계 및 조치) ① 대책 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② 대책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1.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가해자에게 사과 배상 등을 명령한다.
 2. 가해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교내외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할 것을 명령한다.
 3. 가해자에게 상담실 등의 성폭력 및 성희롱 등 여성 문제에 관련 단체에서 일정 기간 봉사활동을 명령한다.
 4.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③ 성희롱 및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을 가한 경우나 재범일 경우는 가중하여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 ④ 대책 위원장은 사건의 심의, 의결 및 처리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사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이의 신청) ① 이 규정에 의한 대책 위원회의 시정 조치 권고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붙여 대책 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대책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재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학생 준수 규정

1. 학생 생활

(1) 일반적인 행사

- ① 12월 5일의 학교 개교기념일 행사
- ② 신입생 지도 - 입학생은 학기 초에 있는 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학교 이념의 발췌 강연에 모든 재학생도 참석하여야 한다.
- ③ 졸업 주간 행사 - 매년 졸업생을 위한 각종 행사에는 12월 초에 거행하되 총장이 시일을 배정해서 시행한다.
- ④ 친선 경기 - 교내 친선 체육대회는 제1학기 기간 중 거행된다.

(2) 정기 행사

- ① 신입생 환영 예배
- ② 부활절 축하 예배
- ③ 추수 감사예배
- ④ 졸업 예배
- ⑤ 헌신 예배

(3) 학생 자치 활동 - 모든 학생 자치 활동은 총장의 재가를 얻은 후 집행한다.

- ① 원우회
- ② 학우회

(4) 학생 실천 활동

- ① 주일 교회 봉사 - 교사, 성가대, 기타
- ② 목회 활동 - 교육전도사, 단독 목회
- ③ 각종 실천 활동에 학교 학생은 모두 참가해야 한다.
- ④ 실천 카드는 매 학기말에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실천학점은 목회 봉사와 주일학교 교사 봉사자에게 부여한다.

2. 학생 준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학생회 준칙은 학칙에 의거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예비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완수케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학생증

제2조 (교부) 입학 절차를 완료한 신입생은 학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휴대 및 제시) 학생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항상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학교 교직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학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 (대여 불가) 학생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제5조 (제한) 학생증을 휴대하지 아니하는 학생은 수강, 수험 및 도서열람실의 이용을 금한다.

제6조 (재교부) ① 학생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하여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재교부 신청을 할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효력) 학생증은 졸업, 퇴학, 제적 또는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제3장 집회, 게시, 인쇄물 배포

제8조 (집회의 허가) ① 학생 단체 또는 학생이 학칙 제42조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집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 교수의 승인을 받아, 집회 5일 전까지 소정 양식의 허가원을 학생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집회 금지) 학생의 집회 또는 단체행위가 목적에 위배되고 학교 내외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금지할 수 있다.

제10조 (집회 보고) 허가를 얻어 집회를 하였을 때에는 사후 결과를 학생복지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게시물)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게시물 등을 붙일 때에는 사전에 그 원안을 학생과에 제시하여 검인을 받고 게시장소와 게시기간을 지정받은 다음에 붙여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게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입간판, 플래카드 등의 경우도 위와 같다.

제12조 (게시물 규격 등) 전조의 게시물 등의 규격과 매수는 별도로 정한다.

제13조 (활동 제한) 학생단체의 활동은 정기시험 개시 1주일 전부터 종료 시까지는 할 수 없다.

제4장 대외 행사 참가

제14조 (경기 참가) 학생이 대외 행사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장 징계

제15조 (징계) 학칙 제4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징계하며, 경미한 과실에 대하여는 경고 처분한다.

1. 근신에 해당하는 행위
 - 가. 교수실 및 사무실 출입 시 결례한 자
 - 나. 흡연자
 - 다. 교내외에서 풍기를 문란하게 한 자
 - 라. 교내 고시물을 무단 제거한 자
2. 유기 정학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전호의 행위를 재범한 자
 - 나. 학우에게 협박 또는 폭행한 자
 - 다. 단체 행사 시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 라. 음주자
3. 무기 정학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전호의 행위를 재범한 자
 - 나. 이유 없이 교직원을 비방하거나 욕되게 한 자
 - 다. 학우에게 집단 폭행을 한 자
 - 라. 교내에서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인쇄물을 붙이거나 배포한 자
 - 마. 고의로 학교시설 또는 교구를 파손하거나 허가 없이 이를 외부에 반출한 자
 - 바. 시험 중 부정행위를 행하거나 이를 계획한 자
4. 퇴학 및 제적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전호의 행위를 재범한 자
 - 나.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내외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 다. 허가 없이 서클을 조직하거나 집회를 한 자
 - 라. 교직원에게 반항하여 그의 위신을 심히 손상시킨 자
 - 마. 교내외에서 불온 인쇄물을 만들거나 살포한 자
 - 바. 폭행으로 타인에게 중상을 입힌 자
 - 사. 교내외에서 학교 명예를 심히 훼손한 자
 - 아.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제16조 (성폭력 징계)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제6장 장애 학생 관련

제17조 (장애우) ① 장애학생들이 교내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는다.

② 장애학생들이 학생 자치 활동, 교내외 활동, 학업 성취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차별을 하지 않는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학생 홍보물 게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면학 분위기 조성 및 시설물 보호 및 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내에 부착되는 모든 홍보물 게시에 대한 검인 절차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홍보물”이라 함은 학생과에 신고하고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는 모든 종류의 현수막 및 게시물을 가리킨다.

제3조 (범위) 교내외 단체가 게시할 수 있는 홍보물은 다음과 같다.

1. 교내 단체

가. 원우회 및 각 학생회와 대의원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대한 홍보물

나. 각 동아리 행사에 대한 홍보물

라. 기타 교학처장이 승인한 행사 및 기타 사항에 대한 홍보물

2. 교외 단체

외부 단체의 홍보물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단체 대표자의 의뢰원(공문)이 있어야 하며, 학생과에서 허가를 받고 검인을 필한 후 지정된 게시 판에 부착한다.

제4조 (절차) 홍보물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지정된 장소에 게시한다.

제5조 (내용 제한) 제시되는 모든 현수막과 게시물은 그 내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제한을 받는다.

1. 칼빈주의적 개혁신학을 비방하는 홍보물은 금지된다.

2. 학교의 건학 이념 및 지도 이념과 상치되는 내용의 홍보물은 금지된다.

제6조 (매수 제한) 현수막 및 게시물을 부착할 수 있는 수량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현수막은 1매로 제한한다.

2. 게시물은 교내 단체는 5매, 각종 공연 포스터는 3매, 외부 단체 홍보는 2매로 정한다.

제7조 (기간 및 철거) 홍보물의 게시 기간 및 철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홍보물의 게시는 행사 1주일 전부터 행사 종료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한다.

2. 게시 기간이 끝난 홍보물은 행사 주관단체의 대표학생 또는 부착자가 필히 철거하여야 한다.

제8조 (보호) 허가를 받고 게재한 홍보물을 고의로 훼손한 학생이나 허가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홍보물을 게시한 학생은 학칙에 의거 징계한다. 이 규칙을 위반한 홍보물은 학생과에서 지체 없이 회수, 철거한다.

제9조 (대외 홍보) 학교 행사를 타 대학교 또는 외부에 홍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

무과의 승인을 받은 후 검인 날인하고, 타 대학교 또는 외부 단체 대표에게 허가를 의뢰하는 서류를 발부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